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2024. 3.

서울특별시교육청
【 참여협력담당관 】

차 례

I. 추진개요	1
II. 추진방향	2
III. 추진체계	3
IV. 2024년 세부추진계획	4
중점과제 1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반 조성	4
① 교육복지사업 학교 내실화로 교육취약학생 지원 기반 강화	4
②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모델 확대	11
③ 교육복지공동체의 협력적 소통과 전문역량 강화로 내실 있는 사업운영	13
중점과제 2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특화사업 내실화	14
①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 서울희망교실 운영으로 학생 성장 지원	14
② 문화예술체험(세꿈) 운영으로 문화예술 감성증진 및 진로역량 강화	15
③ 유아교육복지 두런두런 운영으로 유아 인지발달 및 정서 함양	16
중점과제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 강화	17
① 지역교육복지센터와 학교의 연계·협력으로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강화	17
②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활성화로 학생 거주지 밀착형 프로그램 지원강화	19
③ 지역연계 자원 발굴, 체계화 및 홍보 강화	20
[붙임]	21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참여협력담당관(지역사회협력팀 · 교육복지팀)

I 추진 개요

1 추진 목적

-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학생 성장 지원 강화
-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복지안 전망 내실화

2 추진 근거 및 배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3항 제1호)
- 교육부 훈령 제332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확정('22. 5.)
- 발굴-지원-연계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교육부, '23. 1.)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육취약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위기학생 발굴 지원 등) 체계 마련

○ 교육감 제3기 공약

❖ 약속2. 더 평등한 출발, 【2-5】 통합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2-5-2)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교육감 신년사('24. 1. 3.)

“ 모든 학생이 학습 기회를 보장 받아 주체적인 지식 탐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

II 추진방향

비전

교육취약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정의로운 차등 구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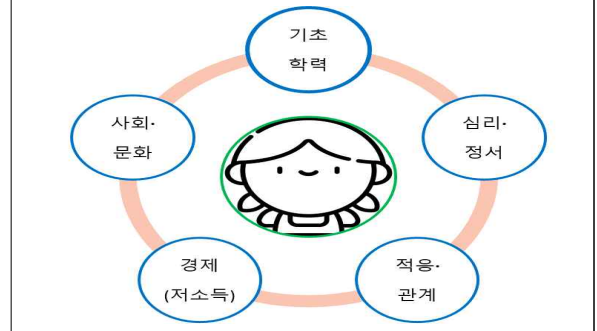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 결합한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운영으로 교육취약학생 지원 강화

□ 서울형교육복지 사업

- ① 서울형 교육복지학교 운영
- ② 사제 멘토링 [서울희망교실]
- ③ 문화예술체험 [새꿈프로그램]
- ④ 유아교육복지 [두런두런] 운영
- ⑤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 ⑥ 지역기반형 교육협력복지사업 운영



□ 교육취약학생 중심의 맞춤 통합지원



추진
방향

- ◆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개별 학생 맞춤 통합지원 확대
- ◆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안전망 내실화
- ◆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을 지양하고 개별 학생 맞춤 통합 지원강화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학생맞춤 통합지원
기반조성

- ① 교육복지학교 내실 운영으로 모든 교육취약학생 지원 기반 강화
- ②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모델 확대
- ③ 교육복지공동체의 협력적 소통과 전문역량 강화로 내실 있는 사업 운영

학생 맞춤
교육복지
특화사업 내실화

- ①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 서울희망교실 운영으로 학생 성장 지원
- ② 문화예술체험[새꿈] 운영으로 문화예술 감성증진 및 진로역량 강화
- ③ 유아교육복지 두런두런 운영으로 유아 인지발달 및 정서 함양

학생맞춤통합지원
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강화

- ① 지역교육복지센터와 학교의 연계·협력으로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 ②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활성화로 학생 거주지 밀착형 프로그램 지원강화
- ③ 지역연계 자원 발굴 및 체계화 및 홍보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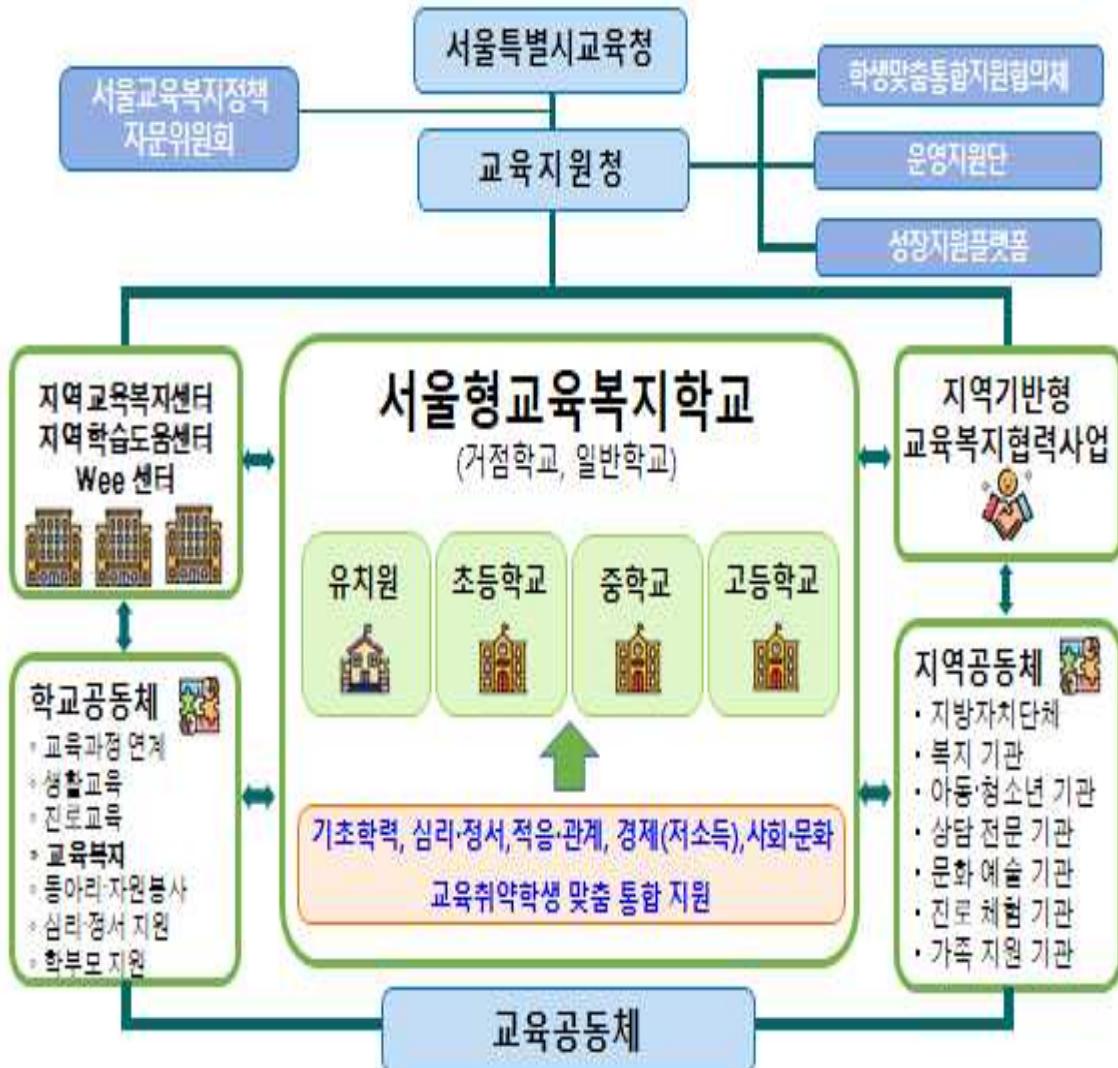
학생 맞춤형지원이란?

교육 구성원의 협력적 소통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 개입,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학생 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 결합한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주요개선 사항

- ◇ 프로그램 위주 사업을 지양하고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 ◇ 사업별(담당자) 중심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관련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III 추진체계



중점과제 1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반 조성

① 교육복지사업 학교 내실화로 교육취약학생 지원 기반 강화

교육복지사업 학교

○ 교육복지사업 학교 지정

■ 지정 기준

거점학교 지정 기준	일반학교 지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저소득학생수¹⁾ 36명 미만의 기존 거점학교 중 해지되는 거점학교 수만큼 신규 지정 - 자치구학교급별 초·중 각 1교 이상 안배 - 소규모학교(18학급미만교) 기준치(1.2배) 적용 - 고등학교 법정저소득학생 50명 이상인 학교 중 희망학교 대상 심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학교를 제외한 초·중·고 전부²⁾ - 단, 국사립초 경제적저소득학생³⁾ 7명 이상 기준 적용 - 소규모학교(18학급미만교) 기준치(1.2배) 적용

- 전년 대비 거점학교 10교(303교→313교) 확대, 일반학교 2교(1,272교→1,270교) 감소
- 신규 고등학교 4교 지정

- 교육복지 학교 현황 : 총 1,270교(거점학교 313교, 일반학교 957교)

(단위: 교)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합계	
전체 학교 수 ⁴⁾	95	151	131	139	101	152	144	130	99	84	94	1,319	
거점 학교	초	24	20	23	17	5	17	20	4	14	9	18	171
	중	19	19	16	19	3	10	16	3	9	8	16	138
	고	0	1	0	1	0	0	1	0	1	0	0	4
	계	43	40	39	37	8	27	37	7	24	17	34	313
일반 학교	초	16	43	43	42	28	51	44	51	28	29	19	394
	중	10	27	19	20	22	38	24	36	23	15	15	249
	고	21	33	29	33	35	34	37	33	23	16	20	314
	계	47	103	91	95	85	123	105	120	74	60	54	957
합 계	90	143	130	132	93	150	142	127	98	77	88	1,270	

- 1) 법정저소득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2) 모든 교육취약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복지 학교 단계적 확대 시행
→ 2023학년도부터 초·중·고 전체 일반학교 지정
- 3) 경제적저소득학생 범위: 법정저소득학생+중위소득 52%이하

○ 운영 중점사항

-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구성·운영(부서 간 협력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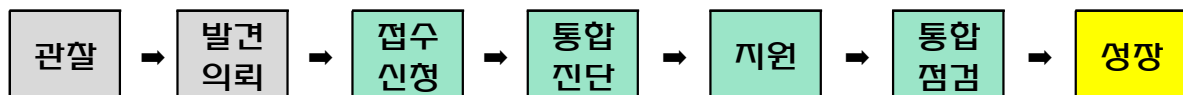
〈학생맞춤통합지원팀(약칭: 통합지원팀)〉 교육 활동 중 교사 혼자서 지원하기 어려운 **교육취약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협의체**

- 사업별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안전에 따라 팀원이 유동적으로 참여 가능** ※ 위원장 교장(감)

- ▶ **기존 교육복지위원회(교육복지통합지원팀)를 학생맞춤통합지원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위원회*를 활용·전환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음**

* 생명존중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교육복지통합지원팀),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교무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장학생심사위원회 등

- 교육취약 학생의 발굴·선정 및 개별 맞춤 지원방안 협의
 - 평상 시 세심한 학생 관찰 및 개별사업 간 연계 방안 강구
 - ※ 각자의 위치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정기회의 시간에 공유, 담임의 요청이나 사안 처리 후 통합지원이 필요할 때 수시로 회의 진행
 - 통합 진단 및 점검을 개별사업과 연계하여 학생의 필요에 적기 대응
 -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체계 구축
- 운영 시기 정례화(월 1회 또는 격주 등)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수시 운영
- 통합지원 운영 절차
 - (발견)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 적극적 학생 관찰
 - (접수-진단) 통합지원팀 내 담당자, 통합지원팀
 - (지원) 개별사업부서
 - (점검-종결) 통합지원팀



4) 전체 학교수: 2023. 4. 1. 교육통계 국·공·사립 초·중·고(1,319교), 2023. 통폐합교 현황 반영(2교 감)

- 통합지원 단계별 주요 내용

구분	절차	주요 내용
사전 준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간 역할 및 업무 분담 · 통합지원팀 운영 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방안 마련 · 관련 예산 확인 및 확보 · 통합지원팀의 역할 홍보 · 학생 문제 행동(상황)에 대한 교원 연수 계획 수립 및 운영
운영	발굴 및 지원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모든 교직원이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에서 지속적 관찰을 통해 발굴 · 정서 행동검사 및 심리 결과 활용 · 담임교사의 학생 상담을 통한 기초 조사 · 전년도 선별되었던 위기 학생 모니터링 · 복합 위기 징후 학생 관찰 및 선별 · 사안 발생 시 담당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처리하되 통합지원이 필요 시 회의를 거쳐 학생 모니터링
	통합 진단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 및 지원 의뢰를 통한 대상 학생 선별 후 사례 회의 실시 · 지역연계 방안 협의(지역기관, 지역교육복지센터, 교육지원청 등 연계)
	지원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요인별 지원 방법 및 교사 별 역할 분담 회의 후 계획수립
	지원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상황 또는 행동 감소 시 일상적인 교육 활동 안에서 지도 · 담임교사, 통합지원팀 위원의 지속적인 관찰, 필요시 다시 요청

○ 지원대상

- 모든 학생은 잠재적 발굴대상에 해당, 전체 교직원의 관심으로 대상 학생 발굴
 - 교육취약 학생: 적응취약(심리·정서, 적응·관계, 기초학력 취약 등), 경제취약, 문화취약 학생 해당
 - 집중관리 학생: 지원대상 학생 중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

대상자	기준 및 범위
심리·정서, 적응·관계, 기초학력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 적응·관계, 기초학습 등 지원이 필요한 담임 추천 학생
경제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저소득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교육비 지원학생(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담임 추천 학생
문화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북한이탈주민·외국인(난민인정자 등) 가정의 학생 등 지원이 필요한 담임 추천 학생

○ 내실 있는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운영 방침

- 교육복지 담당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사업계획 및 운영
 - 기초학습, 다문화·탈북, 상담·보건, 진로·문화예술 등 사업은 기존부서에서 담당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계획 수립(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학교의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교육복지 사업 기획

계획서 작성 시 중점사항

- ◇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 방식은 지양
- ◇ 통합지원팀 운영을 통해서 **개별 교육취약학생 맞춤형 사업 운영으로 지원 방식 전환**
- ◇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학급 단위 예방 프로그램(사업) 편성 가능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구성원 인식 제고
 - 1학기 중 통합지원팀 구성*, 학교 구성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청 연수 및 워크숍 적극 참여
 - 사업별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안전에 따라 팀원이 유동적으로 참여 가능 ※ 위원장 교장(감)

- ▶ **기존 교육복지위원회(교육복지통합지원팀)를 학생맞춤통합지원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위원회*를 활용·전환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음**

* 생명존중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교육복지통합지원팀),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교무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장학생심사위원회 등

- [조기발굴]-[맞춤지원]-[지역연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강구
 - 교육취약학생의 욕구를 파악하고, 학부모(보호자) 상담을 통해 학생 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및 사업 운영
- (맞춤형경비) 맞춤형 경비 지원: 학생 맞춤 개별 지원 원칙
- (가족지원) 교육취약학생 가족지원(보호자 및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사업 등) 운영 가능
- (네트워크) 학교 간, 학교-지역간 교육복지 공동사업 및 지역교육복지센터 사업(프로그램) 연계,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연계,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하는 지역자원 등 연계 가능

- (운영지원) 연수, 워크숍, 교원학습공동체, 통합지원팀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교직원 연수 및 협의회 등 운영 지원, 기타 사항 지원

○ 성과 관리

- 사업의 효과성 파악 및 다음 연도 계획 반영
 - 거점학교 및 일반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연계한 평가 실시
 - 사업학교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 및 개선책 차년도 사업설계에 반영
 - 거점학교(313교) 「교육취약학생 성장지원 효과」 파악을 위해 3년(2022~2024)간 표집검사 실시(연2회, 사전/사후) 및 종단 관리 추진(별도 안내)

○ 예산 교부방식

- 교육복지사업학교 지정유형, 학교급 및 설립별 특성에 따라 예산교부 방식을 다각화하여 사업학교의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예산구분	지원단가	학교유형	교부방식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사업비 (학생당경비)	(초·중)지원학생 당 약160천원, (고)지원학생당 약80천원	공립 초·중·고	개별교부운영비 ⁵⁾
		사립 중·고	통합교부운영비 ⁶⁾
		국립 초·중·고 및 사립 초·중·고	목적사업비
거점학교 운영비	교당 5,000천원	거점학교	목적사업비

교육복지 유치원

○ 교육복지 유치원 지정

- 지정 : 교육지원청별 거점유치원 1개, 일반유치원 2개 이상
 - 교육복지 유치원 현황 : 총 97개(거점 11개원, 일반 86개원)
 - 거점으로 지정한 유치원은 최소 3년간 지정 유지(적극 권장)
 - 거점유치원별 지역사회교육전문가(유치원) 1명 배치([붙임5] 참조)

5) **개별교부운영비**: 학교운영비(공립) 중 특정 수요가 있는 학교에 개별 지원하는 경비로서 목적사업비와 달리 예산 교부 기준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적정 편성하고, 예산편성 범위 내 자율 집행이 가능한 예산

6) **통합교부운영비**: 매년 반복 지원되거나 전체 학교 또는 특수한 여건의 학교 대상 사업, 소액 교부사업 등의 경비를 학교기본운영비(사립)로 통합·교부, 학교별 교육과정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 편성 운영이 가능한 예산

(단위: 개원)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합계
전체 유치원수 ⁷⁾	59	86	86	86	42	79	89	61	61	57	63	769
거점	1	1	1	1	1	1	1	1	1	1	1	11
일반	16	9	5	16	2	5	13	7	2	3	8	86
합 계	17	10	6	17	3	6	14	8	3	4	9	97

○ 운영 체계

- 교육복지 담당교사 배정 및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복지협의회 운영

○ 운영 중점사항

- 모든 유아가 잠재적 발굴대상에 해당, 관찰과 상담으로 대상 유아 발굴
 - 지원대상 유아: 적응취약(심리·정서, 적응·관계, 인지발달 취약 등), 경제적 취약, 문화취약 유아가 해당
 - 집중관리유아: 지원대상 유아 중 복합적 어려움으로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유아

대상자	기준 및 범위
심리·정서 적응·관계 인지발달 취약	○ 심리·정서, 적응·관계, 인지발달 등 지원이 필요한 담임 추천 유아
경제취약 유아	○ 법정저소득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유아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대상과 기준 일치) ○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담임 추천 유아
문화취약 유아	○ 다문화·북한이탈주민·외국인(난민인정자 등) 가정의 유아 등 지원이 필요한 담임 추천 유아

- 내실있는 교육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방침

- 지원대상 유아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유아 및 학부모 욕구 반영한 영역별 통합형 사업(프로그램) 운영
- 사업 운영 성과 평가(학부모 만족도 설문, 유아 관찰 등) 및 환류 반영

7) 전체 유치원수: 2023. 4. 1. 교육통계자료

- 다양한 영역의 교육복지사업 운영 및 연계 지원으로 유아의 통합성장 지원
 - 지원대상 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문화·복지가 통합된 유아성장 지원
 - 유아의 가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성장 지원
 - 그림책 읽기 활동인 두런두런을 통한 유아의 언어능력 향상 및 정서 지원
 - 유아의 상황 파악 후 개별 유아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교육복지공동체 공동사업 및 지역교육복지센터 프로그램 연계
 -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과 연계

○ 예산 교부방식

- 교육복지사업학교 지정유형 및 설립별 특성에 따라 예산교부

예산구분	지원단가	학교유형	교부방식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법정저소득층가정 유아수에 따른 차등지원)	5명이하 2,000,000원 6명~10명 3,000,000원 11명 이상 5,000,000원	공·사립 유치원	목적사업비
거점학교 사업비 ⁸⁾	원당 15,000천원	거점학교	

8) 신규 거점유치원 거점사업비에는 필수비품비(컴퓨터, 프린터, 책상, 걸상 구입 등) 교당 3백만원 추가 지원

② 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모델 확대

선도학교 운영

○ 운영 개요

- 교직원의 협력적 소통체계로 학교 내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에 대한 [조기발굴-맞춤형지원-지역연계] 지원체계 운영
 - 복합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학생의 자존감 증진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도모
- 운영기간: 지정 후 3년 ※ 교육부 특별교부금 별도 지원
- 대상학교: 총 35교 (2023년 12교, 2024년 23교)

○ 학교 상황에 맞는 선도학교 운영모델 마련

- 통합 진단 및 점검을 개별사업과 연계하여 학생의 필요에 적기 대응
- 동학년협의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워크숍 등 다양한 학생통합지원 연수 운영
-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신체, 관계적 측면 등 종합적인 학생지원 성과 확인
-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실시(학생, 학부모 수요, 학생성장지표조사)

▶ 선도학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모델 개발 및 학생중심 통합지원 성공사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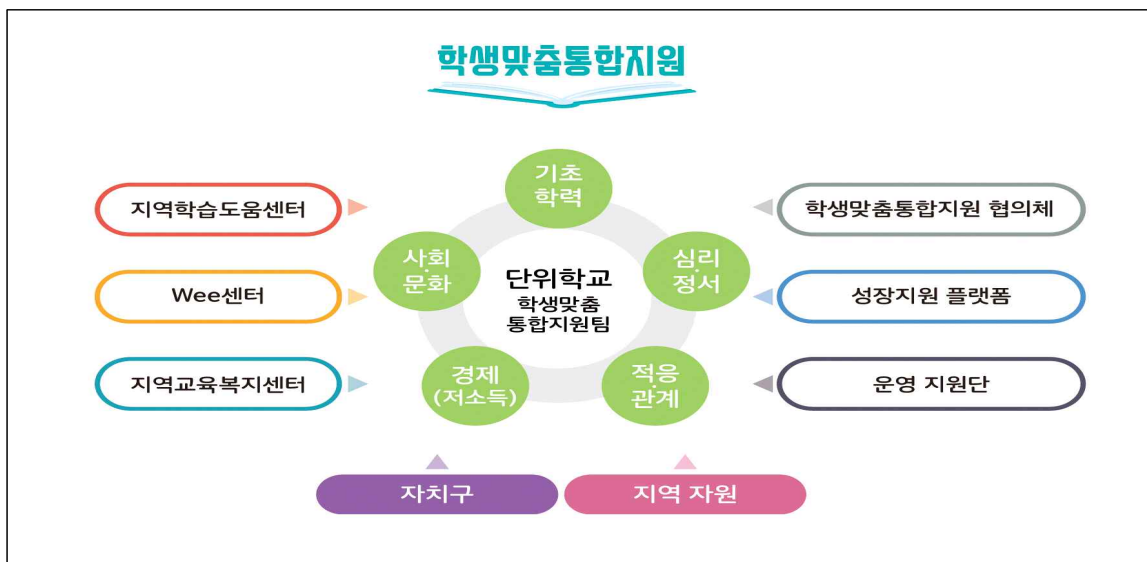
▶ 학교 통합지원팀 구성·운영을 위한 지원역할 수행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통합지원

○ (교육지원청) 자문단 운영 및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 학교의 통합지원팀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운영지원단 구성·운영
 - 선도학교 교원, 교육부 컨설팅 지원단, 학교 담당 장학사 등을 활용하여 학교의 통합지원팀 구성·운영 방안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성장지원 플랫폼 구성·운영
 -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협의 후 운영지원단 활동에도 종료되지 않은 학생 사례에 대한 지원 협의
 - 학생진단 및 지역연계 방안모색, 부서 간 역할 협의 등
 -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맞춤형 지원 플랫폼
 - 운영절차 및 플랫폼 구성은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운영 예정
- 교육지원청 내 센터* 및 전문인력 간 연계·협력, 지자체 등 외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탄력적으로 현장 지원
 - 지역교육복지센터, 지역학습도움센터, Wee센터 등 유기적으로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내 센터 연계강화
 - 교육청 및 자치구의 다양한 센터 및 유관기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 및 자치구 협력 체제 강화



- (본청) 업무담당자 중심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및 자문단 구성·운영
 - 교육청 부서별 업무담당자 중심의 학생중심통합지원 실무협의회 운영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단 구성·운영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자문 등
- (본청) 학생맞춤통합지원 내실화를 위한 관련 담당자 역량 강화
 - 학교 현장의 다양한 통합지원 사례 나눔을 위한 컨퍼런스 운영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안착을 위한 선도학교 관리자 연수 운영

③ 교육복지공동체의 협력적 소통과 전문역량 강화로 내실 있는 사업운영

협력적 소통강화

- 학교-지역기관-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네트워크 운영 다각화
 - 교육지원청 내 학교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취약학생 맞춤형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자율 구성 및 유연한 운영
 - 기존 지역사업운영지원단을 학생맞춤통합지원단으로 재구조화 또는 재편 운영
 - 교육지원청별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자치구 단위)
 - 교원, 지역기관 담당자, 교육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 정보 및 운영 사례 나눔, 학생 지원방향 협의, 이슈 조율 등
 - 학생생활 동선을 고려한 촘촘한 지역교육복지공동체 구성·운영(동단위)
 - 소그룹으로 공동체 구성, 공동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사례관리 및 슈퍼비전 역량강화, 사각지대 학생 발굴·지원을 위한 협력, 공동사업 등 추진
 - 교육복지네트워크 중점기관 선정 및 희망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별도 지원(교당 400~600천원 정도)
- 진심을 담은 집중협의 ‘진담’ 운영(연 4회)
 - (대상) 본청(사무관, 담당자), 교육지원청(교육복지조정자)
 - (방법) 분기별 1회(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의견 반영)
 - 사업 방향성 협의, 본청과 지원청의 상황 공유, 의견 반영 통로 마련
 - 교육복지조정자 역량 강화 연수(워크숍) 포함하여 실시

전문 역량 강화

- 학교 교육복지(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학교급별, 교육주체별 교육복지사업 운영 연수 실시
 - ※ 교육지원청별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관리자(교장, 교감) 연수(필수) 운영
- 교육복지(학생맞춤통합지원) 전문인력 역량 강화
 - 교육복지전문인력(교육복지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유초·중·고) 연수
 - 서울교육연수원 교육복지 직무 연수(14시간, 7월 중), 신규 전문인력 연수(2월)
 - 교육복지조정자 직무역량 강화(10시간 기준)

중점과제 2

학생 맞춤형 특화사업 내실화

①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 서울희망교실 운영으로 학생 성장 지원

서울희망교실

경제·정서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 4~10명에게 교원이 멘토가 되어 학습, 문화, 진로, 정서, 봉사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적응력 향상을 돕는 서울형 교육복지 특화사업

○ 목적

- 경제·정서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취약학생에 대한 교원의 역할 제고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 학생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 증대로 학교 적응력 향상 및 희망의 학교 공동체 조성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3항 제1호
- 서울희망교실 예산집행 방법 개선 계획(참여협력담당관-15458, 2017.12.22.)

○ 사업대상

○ 교원 1인이 교육취약학생(최소 50% 이상) 포함 4~10명 학생과 결연

※ 지원대상: 경제취약(저소득), 문화취약(다문화·탈북), 적응취약(정서·학습 등)

○ 추진내용

- 교사와 교육취약학생 간의 멘토링 운영으로 학생의 통합적 성장 지원
 - 교원이 교육취약학생과 소규모 사제동행 활동 운영으로 학생과의 관계증진
 - 교원의 정서적 지지와 교육 지원활동으로 학생의 주체적인 성장지원
 - 초·중고 총 8,520팀 이상 공모(교육지원청별 시행, 예산선택제 적용)
 - 교원단위신청, 예산선택제, 담임/비담임형 및 멘토 자율적 책임 운영
 - 학습, 문화, 진로, 정서, 봉사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사제동행활동 운영
-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및 성과공유로 서울희망교실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 정착
 - 「서울희망교실 길라잡이」 및 활동기록집(정산철) 지원
 - 투명한 예산 사용과 내실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방문모니터링 및 자체모니터링 실시 강화
 - 서울희망교실 희망토크(지원청)를 통한 운영 지원 및 성과 공유
 - 온라인 밴드 [서울희망교실] 상시 소통, 홈페이지 [꿈사다리] 자료실 등

② 문화예술체험(새꿈) 운영으로 문화예술 감성증진 및 진로역량 강화

새꿈프로그램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교육취약학생들에게 세종문화회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협업하여 공연, 전시 등의 문화·예술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목적

- 상대적으로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교육취약학생들의 욕구·상황 등을 고려한 공연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인문·예술 소양증진, 진로탐색 동기 부여
- 가족단위 또는 교사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유대감 강화, 심리·정서적 안정감 고취

○ 근거

- “용기프로젝트” 계획 수립(교육복지담당관-8317, 2010. 7. 16.)
- 서울시교육청-세종문화회관 업무 협약식 계획(참여협력담당관-8032, 2016. 6. 20.)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참여협력담당관-4996, 2023. 4. 28.)

○ 사업대상: 관내 초·중·고(특수 포함)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⁹⁾

○ 추진내용

- 교육취약학생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확대
 - 세종문화회관 및 기타 지역별 공연장과 연계하여 대상 학생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 양질의 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관람 좌석 등급 향상
- 도움이 필요한 (복합위기)학생의 개별 욕구 진단을 통한 맞춤 진로 탐색·성장지원
 - 학교(학생맞춤통합지원실무협의체, 담임교사, 교육복지전문인력 등) 및 지역 기관(지역교육복지센터 등)으로부터의 추천 및 사례관리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상 학생 발굴·지원
 - 자치구,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취약학생의 지속적 지원 노력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 종료 후 현장 설문지,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 소감문 등을 이용하여 만족도 조사

9) 경제취약(저소득), 문화취약(다문화·탈북), 적응취약(정서·학습 등) 등 복합위기 학생

③ 유아교육복지 두런두런 운영으로 유아 인지발달 및 정서 함양

두런두런

출발점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만3~5세 교육취약유아의 가정환경과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1:1 맞춤형 그림책 놀이 활동

○ 목적

- 교육취약 유아의 정서함양을 통한 사회성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출발점 단계에서 기회의 형평성 제고
- 지역기관과 연계한 취약가정 지원 강화로 가족과 유아의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유치원과 가정의 협력을 통한 유아발달 도모

○ 근거

- 2024 서울교육주요업무 세부실천과제 2-5-1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 구축」

○ 사업대상

지원대상	범위
경제취약 유아	○ 법정저소득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80% 이하 유아 중 지원이 필요한 담임추천 유아 ○ 기타 보호자의 실직 및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담임추천 유아 등
문화취약 유아	○ 다문화·북한이탈주민·외국인(난민인정자 등) 가정 유아 중 지원이 필요한 담임추천 유아
적응취약 유아	○ 정서·학습 부적응 유아 중 지원이 필요한 담임추천 유아

○ 추진내용

- 두두샘 모집 및 연수 실시, 교안 제작
- 1:1 맞춤형 그림책 활동(유아당 그림책 15권)
- 가정 내 [두런두런] 활동을 위한 온라인 동영상 자료 및 부모교육 영상 자료 활용
- 대상 유아 선정 및 학부모 상담, 가족 역량 강화(자율 운영)

1 지역교육복지센터와 학교의 연계·협력으로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강화

지역교육복지센터

학교-지역기관-자치구와의 연계·협력으로 지역 내 교육복지 플랫폼(거점기관)을 구축하여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의 교육취약학생에게 사례관리 및 학교 적응력, 정서·행동, 가족지원 등 영역에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기관

○ 운영목적

- 교육취약학생에게 제한된 영역에서 분절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지역기관-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으로 통합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 자치구 단위의 다양한 지역기관을 활용한 교육복지 네트워크 거점 역할 강화로 학교와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실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 사업대상

- 법정저소득층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기타저소득층학생: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이 추천한 기타 교육취약학생(다문화·탈북의 문화취약, 정서·부적응·학습 부진의 적응취약 등)
-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취약학생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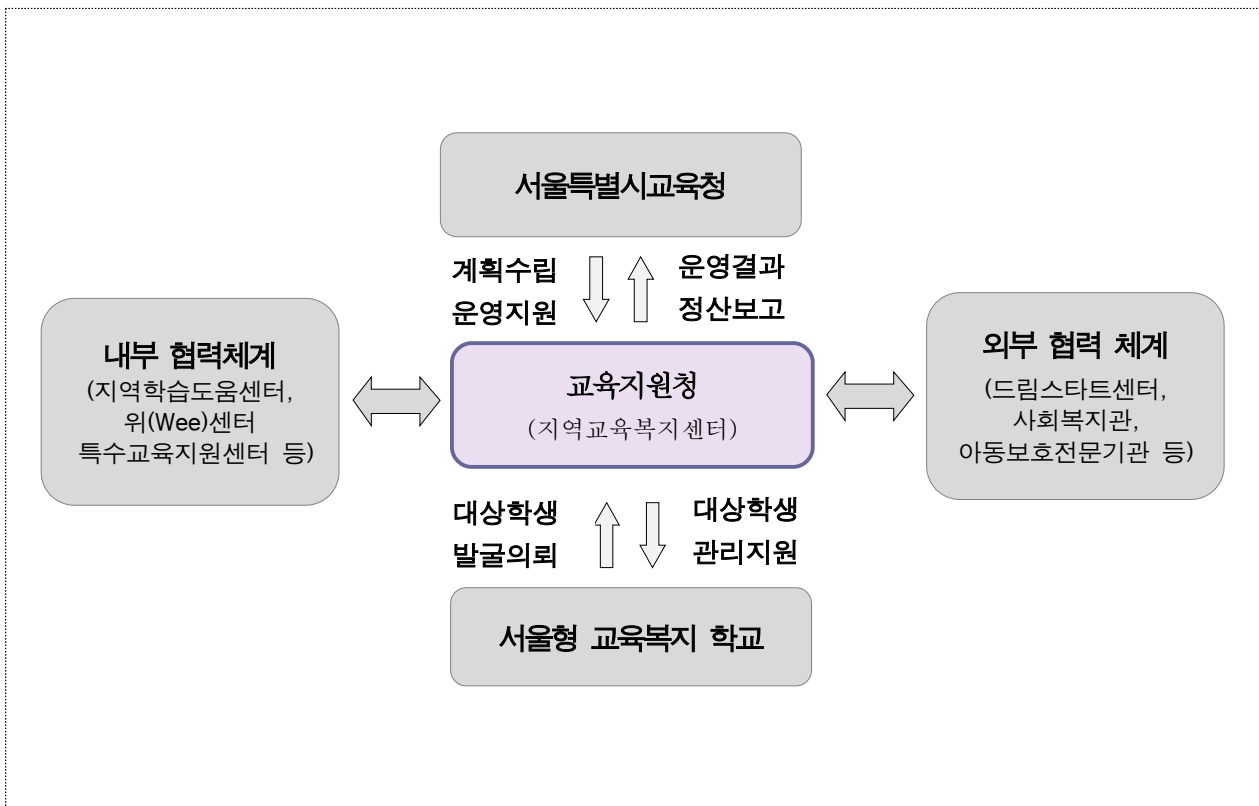
- 학교 내 위기 학생 상담,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안, 지역기관 연계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강화
-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등
-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교육복지 자원 조사·개발로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역기관 연계

○ 지역교육복지센터 유형

- 센터장을 포함한 근무 인원에 따라 4인센터, 5인센터, 6인센터로 구분¹⁰⁾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합계
4인센터		서대문센터	금천센터		용산센터, 종로센터			서초센터	동작센터		강북센터	7개소
5인센터	동대문센터 중랑센터	은평센터 마포센터	구로센터 영등포센터	노원센터 도봉센터	중구센터	강동센터	양천센터	강남센터	관악센터	성동센터	성북센터	15개소 (12개소)
6인센터						송파센터	강서센터			광진센터		3개소
합계	2	3	3	2	3	2	2	2	2	2	2	25개소

○ 지역교육복지센터 모형



10) 위 표 밑줄로 표시된 중점 교육복지센터(15개소)는 특교(1인 인건비)를 지원받아 전담인력 1명이 증원('22년 4인센터→5인센터, '23년 5인센터→6인센터)된 센터로, 학교의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교육복지안전망을 확대 구축하고 취약계층 학생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해짐.

②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활성화로 학생 거주지 밀착형 프로그램 지원강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지역의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복지 협력사업(가족지원, 심리정서, 문화체험, 진로탐색 분야 등)을 선정하여, 교육취약학생이 생활 동선 인근에서 교육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기관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 목적

-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경로에서 교육취약학생 발굴·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 내 학교와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역기관 네트워크 공동체 형성

○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0조(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 사업대상

- 법정저소득층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기타저소득층학생: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등*이 추천한 기타 교육취약학생
(다문화·탈북의 문화취약, 정서·부적응·학습 부진의 적응취약, 복합위기 학생 등)
- * 학교장 등: 학생맞춤통합지원협의체·팀 추천 포함, 담임교사, 지역교육복지센터장,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등으로부터 추천
-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생

○ 선정절차

- ('24. 2~3)교육지원청별 공모·심사 → ('24. 4)본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내용

- 지역기관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이 거주지 인근(洞단위)에서 쉽고 편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에 적극 안내
- 학교-교육지원청-지역기관 간 지속적·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강화
- 학교와 학생(학부모) 욕구 진단을 통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심리·정서 안정성 함양, 다양한 체험 및 직업탐색 기회 제공 등 학생 통합 성장에 기여
-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지역기관에 연계

③ 지역연계 자원 발굴, 체계화 및 홍보 강화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 정비 및 홍보 협력

- 교육지원청(서울미래교육지구, 지역교육복지센터, Wee센터, 지역학습도움센터) 및 자치구(돌봄, 여성, 복지, 아동·청소년 등)의 관련 자원 목록을 통합하여 체계화하고 학교에 통합 안내·공유
 - 교육청 부서 내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연계 자원 체계화
 - 자치구 단위 돌봄, 여성, 복지, 아동·청소년 관련 자원 목록을 학생맞춤통합지원 영역으로 재구조화하여 정리 및 안내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부서의 업무협력 및 조정
 - 예시: (학교통합지원센터) 긴급·위기학생 지원, (교육협력복지과) 교육취약학생 지원, (초·중등교육지원과)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인적 자원 발굴 및 활용
 - 학생맞춤통합지원 영역에 부합하는 지역 내 전문적 자원봉사자(상담, 복지, 수업지원단, 활동지원단, 봉사인력지원 등) 발굴 및 협력
- 학생맞춤통합지원 홍보 강화를 위한 리플릿 등을 제작하고 학교 및 지역기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홍보 자료로 활용

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자원공유 플랫폼 구축

- 교육청 부서별 자원 목록의 공유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자원발굴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역연계 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 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 및 홍보 활성화

붙임1

2024학년도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예산현황 및 지원 기준

□ 주요 사업예산 현황

(단위: 천원)

주요사업	'24년도 예산액	'23년도 예산액	비고
서울형 교육복지학교 운영	4,171,982	4,840,160	유 97개원, 초 565교, 중 387교, 고 318교
서울희망교실	5,989,998	6,009,278	총 8,520팀 이상 (팀별 50~70만원)
두런두런 프로그램	315,480	332,560	대상유아 600명
새꿈 프로그램	81,900	83,620	20개 공연, 1,500명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6,153,121	6,108,450	지역교육복지센터 총25개소 (중점센터 15개소 포함) 운영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562,320	917,680	100개 프로그램 운영
교육복지 역량강화	103,200	147,600	교육복지 전문인력 347명
합 계	17,378,001	18,439,348	

□ 지원액 산정 기준

구분	지 원 액 산 정 기 준	
교육 복지 학교	유치원 (97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유치원(11개원) : 운영비+지역공동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유치원별 공동사업비 10,000천원, 운영비 5,000천원 - 신규 거점유치원 필수비품비 3,000천원 ■ 일반유치원 : 프로그램 운영비(차등 지원) ■ 거점·일반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비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저소득가정 원아 수에 다른 차등 지원 - 5명 이하(2,000천원) / 6~10명(3,000천원) / 11명 이상(5,000천원)
	초·중 (309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학교 공통운영비(5,000천원) ■ 신규 거점학교 교육복지실 설치비 교당 20,000천원 지원 ■ 학생당 경비(지원학생수×약16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당 최고 25,000천원 / 최저 15,000천원 ※ 학생당 경비 최저액 15,000천원 이하 거점학교에 대해 보전액 지원(예정) ☞ 거점학교 사업비(공통운영비 포함): 교당 최고 30,000천원 / 최저 20,000천원
	고 (4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학교 공통운영비(5,000천원) ■ 신규 거점학교 교육복지실 설치비 교당 20,000천원 지원 ■ 학생당 경비(지원학생수×8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당 최고 25,000천원 / 최저 15,000천원 ※ 학생당 경비 최저액 15,000천원 이하 거점학교에 대해 보전액 지원(예정) ☞ 거점학교 사업비(공통운영비 포함): 교당 최고 30,000천원 / 최저 20,000천원

구 분		지 원 액 산 정 기 준					
교육 복지 학교	일반 학교 (964교)	초 · 중 (650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당 경비(지원학생수×약160천원) - 학교당 최고 15,500천원 / 최저 2,000천원 - 거점해지교 안정화 예산 26,000천원 이내 지원 				
		고 (314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당 경비(지원학생수×80천원) - 학교당 최고 12,000천원, 최저 2,000천원 지원 				
교육 복지 특화 사업	두런두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중인 교육취약 유아 대상 1:1 그림책 활동 600명 운영 - 팀당 400~500천원 지원 					
	서울희망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초·중·고 서울희망교실 8,520팀 운영 - 팀당 500~700천원(100천원 단위 팀별 자율적 예산 선택) 					
	새꿈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대상 공연 관람료(R석 이상) - 100천원 x 학생수 x 공연수 					
교육 복지	지역교육 복지센터 (25개소)	유형	개소	인건비		사업비 (고정)	운영비 (고정)
				총액제 (고정)	신청제(변동)		
		4인 센터	7	160,100 천원	(근속수당) 1년당 35,000원 가산 (가족수당) 직계가족 대상	37,000천원	23,000천원
		5인 센터	15	198,000 천원		41,000천원	26,000천원
6인 센터	3	236,000 천원	41,000천원	26,000천원			
지역 협력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지 원 기 준					
		법정저소득 학생수		교육지원청		청별 금액	
네트 워크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4,400명 이상		3	서부, 북부, 강서양천	60,000천원	
		4,400명 미만 ~ 3,400명 이상		4	동부, 남부, 강동송파, 성북강북	50,000천원	
		3,400명 미만 ~ 2,400명 이상		2	중부, 동작관악	45,000천원	
		2,400명 미만		2	강남서초, 성동광진	40,000천원	
2023. 7. 1.자 기준 법정저소득 학생 수 고려							

1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개요

구분	내 용
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및 집행은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계 규정 준용 ○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단위사업명-학생복지, 세부사업명-교육복지우선” 으로 통일하여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초·중·고 사업비는 개별교부운영비로 교부 - 사립 중·고(재정결함보조금 지원교) 사업비는 통합교부운영비로 교부 - 유치원(거점·일반) 사업비, 국립 초·중·고 및 사립 초·중·고 중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 사업비, 거점학교(초·중) 공통운영비 등은 목적사업비로 교부 ○ 교육취약학생들을 위한 특색있는 학생 맞춤형성장지원 프로그램 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맞춤형 교육활동을 통해 지원 혜택 제공
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교부운영비, 통합교부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상한 비율에 따라 학교에서 전체 사업 업무추진비 상한액 내에서 조정하여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57p. 및 「사립학교 교비회계 2024학년도 예산 및 2023학년도 결산지침」 59p. 참조 - (목적사업비) 사업비의 5% 이내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교육복지공동체 중점기관인 학교는 사업비의 8% 까지 편성 가능 - 교직원의 교육복지 마인드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워크숍) 필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교육복지사업과 무관한 단순 행사성 연수 경비 집행 불가 ○ 학생맞춤형 지원비는 통합지원팀 협의를 거쳐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집행 가능 (교육취약학생 지원에 한함, 단순 물품지원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집행) ○ 교육복지 네트워크 중점학교에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400~600천원 지원 ○ 사업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여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예산 반납 등 행·재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예산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예산(목적사업비) 집행 잔액 학교별 통합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거점·일반), 국립 초·중·고 및 사립 초·중·고 중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 거점학교 운영비 등 -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예산(공동체 중점기관 운영비, 권역별 협의체 중점기관 운영비) - 서울형 교육복지 특화(서울희망교실) 예산

가. 학생맞춤통합 지원

- 교육취약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운영
- 사업 운영 시 교육취약학생 노출 방지 및 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하여 일반학생도 활동비 사용 가능(단, 교육취약학생 참여비율 준수)
 - 친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학교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외부 견학 차량비, 강사비 지원
- ※ 단,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위기지원 및 맞춤형경비는 교육취약학생 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통합지원팀에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지원 가능
- 학교 간 공동사업이나 지역기관과 연계·협력사업 예산 편성 가능
- 방과후학교, 대안교실 등 학교 내 기존 프로그램 우선 활용
- 사제멘토링 운영
 - 교육취약학생 최소 50%이상 포함하여 운영
 - 일회성 활동 지양하고, 교내·교외 활동 실시
 - 문화체험 활동 시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예산편성
 - 합목적적 활동은 멘토 교사와 멘티 학생의 식사비, 체험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지원 단가가 높은 체험활동, 공연관람 등은 교육취약학생 대상으로 지원, 단순한 체험위주의 일회성 프로그램 지양
- 사업계획의 취소 및 신설로 예산사용이 변경될 경우
 - 통합지원팀 회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회의록 기록 및 내부결재)
-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학생 안전관리 철저
- 교육취약학생의 사례관리 및 기타 지원처리 시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나. 맞춤형 경비 지원

-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경비는 사업비 교부액(거점학교는 공통운영비 제외)의 50% 이내로 편성(단순 물품지원은 사업비 10% 이내로 집행)**
- ※ 단, 교육취약학생의 위기상황이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팀 협의를 거쳐 학교장 결정으로 지원 가능

*위기상황(예)		
구분	내용	비고
위기학생 긴급지원	위기학생 중 생명(자살), 안전(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상황 등 긴급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절차를 숙지하여 담당부서 연계 및 사안에 따라 협력 조치	통합지원팀 협의
경제적으로 실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비법정저소득가정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발견 시,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신고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보장기관 :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희망복지지원단 등
긴급복지지원대상 학생(생계위기)	긴급복지지원대상학생(생계위기) 발견시 신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 긴급복지담당공무원

○ 교육취약학생의 정상적 학업수행을 위한 위생, 건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공부조, 지역사회 자원 등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경우 보충적 지원 가능

- 치과 치료, 안경 지원, 기타 교육경비 지원 등

○ 지원학생 선정, 지원예산 범위 등은 학교장 결재 거쳐 결정

○ 원칙적으로 현금 지원 및 전체 교육취약학생에 대한 일괄 지급 불가

○ 학원비(강습료 등) 지원 금지

-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강사를 초빙하거나, 자원봉사자를 연계

- 교육복지사업은 교육취약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지원이므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원비로 사업비 직접 지급 금지

※ 맞춤형 지원비(예시)

· 생활지원: 생필품, 식료품, 방역물품, 위생용품 등

· 교육지원: 학습자료, 도서, 온라인수업에 따른 필요 물품 등

· 건강지원: 병원비, 건강검진 및 치료비, 상담비(심리검사비) 등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출 관련 증빙 자료는 5년간 보존

다. 교육복지(학생맞춤통합지원) 이해 증진 및 담당자 역량강화 활동 지원

○ 소규모 단위 통합 프로그램 운영

○ 교직원 및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대면·비대면 연수 등

○ 신규 지정된 학교는 교직원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장/교감 적극 참여 권장

라. 교육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중점기관에 한함)

-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질적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 편성 가능
- 중점학교는 별도의 운영비 별도(400~600천원) 추가 지원

마. 운영 지원

- 【업무추진비】 교부재원(개별교부운영비, 통합교부운영비, 목적사업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
 - (개별교부운영비, 통합교부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상한 비율에 따라 학교에서 전체 사업 업무추진비 상한액 내에서 조정하여 편성¹¹⁾
 -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 교부액의 5% 이내로 편성단, 교육복지공동체 중점기관 학교는 사업비의 8%까지 편성 가능
- 【식비, 간식비】 학생의 식비는 1인당 8,000원, 간식비는 1인당 5,000원 이하로 책정
- 【출장여비 지급】 전문인력 출장비는 서울형 교육복지 사업 예산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외 교육복지사업 관련 교직원 출장비는 학교운영비(여비)¹²⁾에서 지급함
- 학교 전체 공공요금 집행 불가
- 전체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예술제·운동회 행사 지원 불가함. 다만, 교육복지사업의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사의 경우 지역기관과 협조하여 진행하고 교육취약학생 활동비 지원 가능
- 교육복지 전문인력 연수비: 연 300천원 이하(전문자격 관련 법정 보수교육비,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연수 등)

바. 기타 사항

- 단위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수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복지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

11)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57p. 및 「사립학교 교비회계 2024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지침」 59p. 참조

12)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55p.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 편성 및 집행 기준 참조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 및 지원 중단
 - 목적사업비로 지원된 사업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강사료 예산 지원 기준

가. 전문상담 강사

- 각종 심리치료, 상담 및 임상 심리검사 등 외부 상담 전문가 초빙
 - 전문상담사는 상담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 소지자
 - 박사이상 수료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상담경력 3년 이상
 - 기준 미달 시 교육복지 기타 프로그램 강사 수당 단가 적용
 - 지급기준(※ 1회 60분 기준)
 - 개인상담 1회 : 60,000원
 - 집단상담 1회 : 60,000원 ~ 110,000원
 - 임상심리검사 1회 : 60,000원 ~ 110,000원
- ※ 학교 실정에 따라 일급제 및 시급제 직원 인건비 단가 적용 가능

나. 기타 프로그램 강사

-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 프로그램 강사
 - 지급기준
 - 교내강사 : 시간당 30,000원
 - 외부강사 : 시간당 43,000원
- ※ 학교 실정에 따라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단가를 결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사업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유치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학년도 서울형 교육복지학교(유치원) 지정 계획 수립 및 안내 ○ 2024학년도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수립 ○ 중간 모니터링 실시 ○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 결과 제출 ○ 2024학년도 사업 추진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12월 ○ 3월 ○ 7월~8월 ○ 10월~11월 ○ '25. 2월
서울희망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희망교실 공모 및 운영계획서 제출 ○ 서울희망교실 선정 및 예산 교부, 설명회·연수 ○ 중간 자체평가 ○ 2024학년도 사업 추진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3월 ○ 3월~4월 ○ 7월~8월 ○ 12월
두런두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런두런 운영계획 수립 ○ 두런두런 대상 유아 선정 ○ 프로그램 평가 제출 ○ 2024학년도 사업 추진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 3월 ○ 11월~12월 ○ '25. 1월
새꿈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꿈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관람 인원 모집 및 관람 진행 ○ 만족도 조사 ○ 2024학년도 사업 집행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 3월~11월 ○ 12월 ○ ' 25. 1월
지역교육 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운영 감사 ○ 종합·연차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 연간 사업추진 현황 제출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 5월~9월 ○ 11월~12월 ○ 4, 7, 11, 12월 ○ 12월~'25. 2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 협력사업자 공모 추진 및 선정 ○ 평가실시 및 결과 제출 ○ 연간 사업추진 현황 제출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 2월~4월 ○ 10월~11월 ○ 5, 8, 11, 12월 ○ 12월~'25. 1월
성과관리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학교 학생 역량 표집검사 및 분석 ○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실시 및 제출 ○ 유공자 및 기관 표창 수여 ○ 종합성과 분석 및 평가 결과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11월 ○ 10월~11월 ○ 10월~11월 ○ 12월~'24. 2월

붙임4

2024학년도 교육복지 업무 담당자 및 전문인력 연수 일정

주 관	연 수 종 류	시 기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관계자 회의	연중
	○ 신규 교육복지 학교 관계자 연수 자료 안내	3월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연수	4월 예정
	○ 서울희망교실 일반직 담당자 연수(총 1회)	4월초
	○ 서울희망교실 신규선정교원 설명회(총 1회 이상)	4월초
	○ 교육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직무연수 -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연수원) 과정(120명 예정) *연수원에서 별도 공문게시 및 신청 접수(예정) - 교육복지조정자(별도 안내 예정)	7월 예정 6월 예정
	○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중점기관 워크숍(별도 안내 예정)	10월 예정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직무A)[원격 상시과정] :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 학교직원	2.1.(목)~12.17.(화)	
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	○ 교육복지우선지원(유·초·중·고) 신규 담당 교원 연수	2월~4월
	○ 교육복지우선지원(초·중·고) 관리자(교장 및 교감) 연수	2월~12월
	○ 서울희망교실 기존·업무담당교원 연수	4월
	○ 교육복지우선지원(초·중·고) 특화 및 맞춤형 연수	4월~12월
	○ 지역사회교육전문가(유초중고) 직무연수(각 4시간)	4월~12월

※ 교육(지원)청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5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 및 역할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제12조 사업전담인력의 배치·활용)

○ 전문인력 구분

- 교육복지조정자: 본청(1명) 및 교육지원청(각 2명)에 배치
- 지역사회교육전문가(유치원): 교육복지 거점유치원에 배치(원당 1명)
- 지역사회교육전문가(학교): 교육복지 거점학교에 배치(교당 1명)

○ 배치 현황(총 347명)

구분	거점유치원	거점학교			교육청	
		초	중	고	교육지원청	본청
직명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치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학교)			교육복지조정자	
인원 (정원)	11명	171명	138교	4명	22명	1명

※ 지역사회교육전문가(학교)는 사립학교 26명 포함, 2022년 293명 → 2023년 303명 → 2024년 313명으로 증원

○ 주요 역할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 단위학교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맞춤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연계·협력 역할 수행 강화(개별학생 중심 사례관리, 자원 연계 등 학생 개별 지원, 지역 전문기관 및 자원 학교 연결 강화)

-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교육복지조정자]

-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
- 사업대상학생의 발굴 및 지원
- 사업계획의 수립·지원, 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대한 지원
- 교육지원청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학교 지원 및 지역연계·협력 역할 강화

붙임6

지역교육복지센터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 지역교육복지센터 개념

- △ 학교-지역기관-자치구와의 연계·협력으로 지역 내 교육복지 플랫폼(거점기관)을 구축
- △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학생 지원
- △ 교육취약학생의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 지원
(학교적응력, 정서·행동, 가족지원 등영역)

※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지역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위탁 운영함

○ 주요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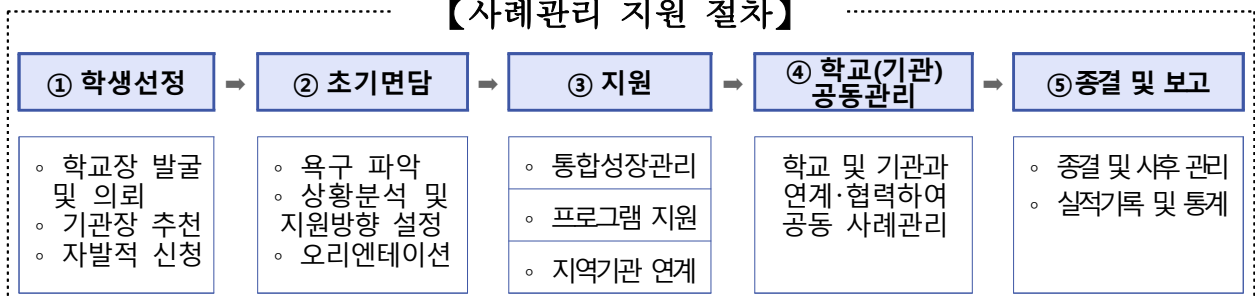
-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등
-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교육복지 자원 조사·개발로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역기관 연계
- 학교 내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안 등 교육복지 일반학교 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교육부 국정과제)과 연계하여 민·관·학 협력을 위해 센터 참여(협조)

○ 센터 운영 역할 모형



○ 센터 사례관리 지원 절차

【사례관리 지원 절차】



붙임 7 위(Wee) 센터

○ 근거

- 교육부 훈령 제329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 위(Wee) 센터 운영 현황

소속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본청	합계
센터명	동대문 중랑	서대문 마포 은평어울림	영등포 금천 꿈세움	도봉 노원	중부 종로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어울림	성동 마음0랑 광진	강북 성북	서울통합 위드위	26
계	2	3	3	2	2	2	2	2	2	2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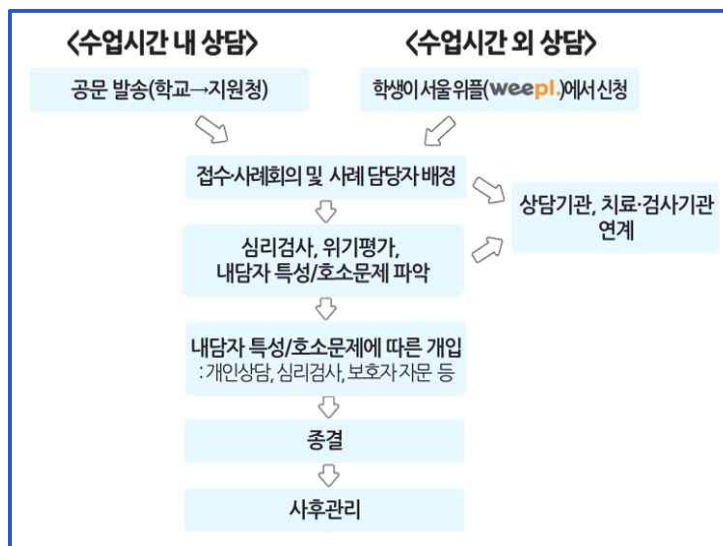
○ 주요 사업 내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심리정서 위기학생 심리치유 지원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운영 지원
- 단위학교 전문상담(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자료 개발
-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서울 위플(Weepl)』 운영·관리
- 위탁 위(Wee) 센터 운영: 피해학생 특화지원 위드위센터 및 가해특화지원 꿈세움 위센터(총2개소)

○ 위(Wee) 클래스 및 위(Wee) 센터 포함 위(Wee) 프로젝트 상담·치유 단계



○ 위(Wee) 센터 상담서비스 지원 모형



붙임 8 지역학습도움센터

○ 근거

- 기초학력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 목적

-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특수·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하는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학교 밖 지원센터

○ 주요 사업 내용

-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상담] 지역학습도움센터에서 위촉한 학습상담봉사자가 방과 후·방학중 25회기 내외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및 보호자 상담 진행
-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학교에서 의뢰한 난독·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지원기관과 연계한 심층 진단 및 개별 맞춤형 중재 지원
- [학생통합지원] 관계·심리·정서 등 복합요인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생통합협의체 운영 및 지역학습도움넷 연계협력을 통한 학생통합지원 실시
-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역 여건 및 학생의 상황을 반영한 학습지원 중심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학습도움센터 학생통합지원 체계

